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 (대안)

의안 번호	1770
----------	------

제안연월일 : 2005. 5.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변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적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는 공민교과서 및 지리교과서 등 묵과할 수 없는 최근 일련의 도발적인 일본국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일본국의 도발적인 행위들은 그간 한·일 양국이 쌓아온 정치적·경제적 선린우호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에도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법 질서를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아닐 경우 일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적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과정에 일본정부가 개입한 사실 등은 일본국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이 제국주의적 망령에 젖어 계획적·의도 적으로 영토침탈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국 일부 공민 및 지리교과서의 왜곡된 독도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행위들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내의 건강한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일본국이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외국의 주권과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우정의 해를 통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양국간의 관계에 더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선린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제안경위

가. 2005년 2월 28일 최성의원 등 33인이 제안한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망언 규탄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 2005년 3월 16일 강재섭의원 등 118인이 제안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결의안」, 2005년 3월 18일 천영세의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2005년 3월 18일 문희상의의원 등 83인이 제안한 「일본국의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독도의 날 조례폐기 등 촉구결의안」, 2005년 3월 24일 신국환의원 등 22인이 제안한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이 각각

2005년 3월 2일, 2005년 3월 16일, 2005년 3월 21일, 2005년 3월 21일, 2005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53회국회(임사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4.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53회국회(임사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5.3)에서 위 5건의 결의안은 각각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취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 5건의 결의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정치인들의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는 일부 공민교과서 및 지리교과서 등 묵과할 수 없는 최근 일련의 도발적인 일본국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함.